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12.

서울특별시의회
김경 의원(무소속, 강서1)

□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경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법률을 따르는 조례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안 제18조제1항의 구청장이 자치구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,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하도록 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□ 또한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고, 같은조 제2항을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

운영관리계획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